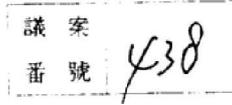


##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提出年月日：1994年 5月 日

提出者：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 '93.12.27 法律 第4613號로 地方公務員法(第6條 第2項)이 改正되면서 地方自治團體長의 地方公務員 任用權限의 委任範圍가 “補助機關의 長, 所屬機關의 長”에서 地方議會의 事務處長等에게도 委任할 수 있도록 改正됨에 따라, 議會事務處長에게 所屬公務員 任用權의 一部를 權限委任하고,
-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既 委任된 任用權과 關聯한 一部權限을 追加委任하여 效率的인 人事管理를 기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 議會事務處長에게 權限委任하는 事項
  - 5級以下 一般職 公務員의 議會事務處內 轉補權
  - 6級相當以下 別定職 公務員의 新規任用·轉補·懲戒·免職等の 任用權 全般
  - 技能職公務員(6等級 以下)의 新規·轉補·昇進任用, 懲戒, 免職等の 任用權 全般
  - 專門職 公務員의 採用契約 및 採用期間 延長
  - 人事委員會의 設置·運營
- 上水道事業本部長에게 權限 委任하는 事項
  - 人事委員會의 設置 運營

### 3. 參考事項

- 關係法令 拔萃
  - 地方公務員法 第6條 및 第7條

## 4. 其他 參考資料

### 가. 關係法令 拔萃

#### 地方公務員法

第6條(任用權者)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特別市·直轄市·道의 教育監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은 이 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所屬 公務員의 任命·休職·免職과 懲戒를 行하는 權限(以下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任用權을 가지는 者는 그 權限의 一部를 그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補助機關, 그 所屬機關의 長, 地方議會 事務處長 事務局長·事務課長 또는 教育委員會 議事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條(人事委員會의 設置) ① 地方自治團體에 任用權者 (任用權을 委任 받은 者를 除外하되, 그중 市의 區廳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所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별로 人事委員會를 둔다.

② 人事委員會는 委員 5人以上 7人以下로 構成하되, 第3項 각호의 規定에 依하여 委囑되는 委員은 2人으로 한다.

③ 委員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國家公務員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者로서 人事行政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다만, 試險委員은 試險實施機關의 長이 따로 委囑할 수 있다.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2. 大學에서 法律學·行政學 또는 教育學을 擔當하는 副教授以上の 職에 있거나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 校長의 職에 있는 者
3. 公務員(國家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서 20年以上 勤續하고 退職한 者

### 나. 他 直轄市 比較

- 議會事務處長에게 任用權等 委任 與否

단 위 사 부	위 임 여 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우리시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와 동일함.	○	○	×	○

※ 부 산 :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미위임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구청장·사업소장”을 “의회사무처장·구청장·사업소장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표2, 별표3”으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3”중 총무과란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무과	1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의 회 사무처장
	2	○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징계·면직등의 임용권 전반	〃	〃
	3	○ 기능직 공무원(6등급이하)의 신규·전보·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면직등의 임용권 전반	〃	〃
	4	○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	〃
	5	○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동법 제7조	〃

사업소장등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 별표3 ]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무과	5	○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지방공무원법 제7조	상 수 도 사업본부장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u>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u> ----- 이하생략</p> <p>제2조(위임사항) 직할시장의 사무중 <u>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u></p>	제1조(목적) -----	-----	<p>--- 그 일부를 <u>의회사무처장·구청장·사업소장등</u> -----</p> <p>제2조(위임사항) ----- <u>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 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u></p>
	( <u>신 설</u> )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별표1]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 무 과	1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 6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징계·면직등의 임용권 전반	"
		3	○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6등급이하), 징계·면직등의 임용권 전반	"
		4	○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5	○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동법 제7조
				의회 사무처장
	( <u>신 설</u> )	[별표3]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 무 과	5	○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지방공무원법 제7조
				상수도사업본부장